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3월 5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2025년 3월 14일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도시건설국장 변 상 용

나. 제안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하도급 참여 등에 관한 이행상황 점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민간공사 참여를 활성화하며 용어 등의 정비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 용어 등 정비(안 제2조~제3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2조~제13조, 안 제17조)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2025년도 추경예산 편성 예정
-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재 환

### ○ 본 조례안은

- 관내 공사의 이행상황 점검에 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 검토 결과,

- 관내 공사의 이행상황 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현황, 자재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건설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